

부 천 행 복 재 가 복 지 센 터

이 용 계 약 에 관 한 사 항

다음은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.

1. 계약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2. 계약기간

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
3. 서비스의 내용

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,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가. 신체활동지원

나. 일상생활지원

다. 정서지원

라. 인지활동지원

마. 가사 일상생활지원

바. 지역자원 연계

4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1)월 이용료

월 이용료는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『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』의 급여종류별 『급여비용』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(%) 을 곱하여 산정 하여 납부 한다.

2) 등급별 월 한도액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3) 본인부담금

구분		금액(원)	내역
월 이용한도	공단부담금	85%(일반)	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% 중 85%~100%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
		91%(감경)	
		94%(감경)	
		100%(수급자)	
본인 부담금	보험료 (개인부담금)	15%(일반)	보험공단이 85%이고 본인부담금이 15%임
		9%(감경)	보험공단이 91%이고 본인부담금이 9%임
		6%(감경)	보험공단이 94%이고 본인부담금이 6%임
		0%(수급자)	보험공단이 100%이고 본인부담금이 0%임

4)급여제공 시간별 수가

*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(단위 원)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7,450	150분 이상	50,640
60분 이상	25,320	180분 이상	57,020
90분 이상	34,120	210분 이상	63,530
120분 이상	43,430	240분 이상	70,080

*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(단위 원)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50,100

5)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이용자가 100% 전액 부담 한다.

6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체 등에 관한 사항

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,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.

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1)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권리
- 2)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(별지 제24호서식)에 대하여 요구할 권리
- 3) 『소득세법』에 따른 의료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
- 4)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
- 5) 급여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권리
- 6)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

2) 신원 인수인의 의무(갑(수급자)을(기관) 병(신원인수인))

- 1)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(월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할수 없다)
- 2) 제3조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2 (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) 준수
- 3)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
- 4) “을”의 장기요양요원의 부당행위시 “을”의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
- 5)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
- 6)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

3) 계약의 해제

- 1)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2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
- 3)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
- 4)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
- 5)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
- 6)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
- 7) 이용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·폭행·상해·성희롱·성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우
- 8) 기타 센터와 계약 당사자와 합의 할 경우